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자료집

대통~소통~

#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2022. 9. 2.(금) 14:00

 YouTube [대조동 주민자치회](#) 



대조동 주민자치회

#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 CONTENTS 첫번째



1. 대조동 일반 현황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3. 2021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감사보고
4.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CONTENTS 두번째



- 5. 2022년도 사업 실행보고
- 6. 2022년 보조금 및 활동지원금 집행현황
- 7. 대~통 소~통 제2회 대조동 주민총회
- 8.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선정 보고



## CONTENTS 세번째

- 9. 기타활동
- 10. 부록



주인 모두에게  
통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김익남입니다.

2022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어느덧 2023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로  
막혔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많은 대면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주민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성황리에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대조동 곳곳에 대추나무 심기 행사,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워터파크 개장, 골목놀이  
프로그램 진행 등 돌이켜보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며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

2022년 대조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구석구석 발로 뛰며 발굴한 7건의 사업을  
상정하고 의제개발 승인완료 하였습니다.

\*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발굴 및 선정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슬로건인 <대통! 소통!>처럼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모두에게 통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더더욱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도 성숙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김 익 남**

◇

#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조동장 천현주입니다.  
먼저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2022년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도 부족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성황리에 진행해 주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아해보면 봄에는 마을 곳곳에 대추나무를 심고 여름에는 어린이를 위한 워터파크와 골목놀이터, 미술코딩 수업을 운영하였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주민총회, 대추마을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온동네가 하나가 되는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어 장수사진방, 따뜻한 뜨게방 운영, 리사이클링 양말목 미니가방을 만들면서 주민 간에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추나무로 하나되어 세대 간에 화합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또 한 걸음 나아가며 소중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주민 의견 하나하나의 소통이 모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슬로건인 <대통! 소통!>처럼 대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동네 골목골목 사잇길 마다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잘 어우러져 지내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조동 동장 천 현 주



## 지역특성

통일로 연서로, 진흥로, 서오릉로로 둘러싸인 은평구 중심지역  
역촌역, 불광역, 연신내역, 구산역 4개 역이 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일반 현황



### 복지수요

기초생활 수급자 .....	<b>1,590</b>
차상위 .....	<b>604</b>
저소득 독거어르신 .....	<b>327</b>
한부모가정 .....	<b>105</b>
등록 장애인 .....	<b>1,254</b>
급식지원 아동 .....	<b>55</b>

##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회의 운영

회의명	참여주체	주요내용	개최일시
정기회의	전체위원	운영세칙, 자치회 사업, 총회 상정안건, 주요일정 등 변경사항	매월 두 번째 화요일 18:30
사무국 회의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에 관한 내용	수시로
운영진 회의	자치회임원, 분과장, 분과총무	임원선출 및 주요 회의 진행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1:00
민관협력회의	자치회임원, 동장, 행정팀장, 담당주무관	자치회 전반적운영 및 협력사항	매월 1회 추진
자치회관운영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사무국장 등	분과별 사업제안 및 사업실행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4:00
환경안전생태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사무국장 등	분과별 사업제안 및 사업실행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0:00
건강복지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사무국장 등	분과별 사업제안 및 사업실행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8:30
홍보소통교육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사무국장, 등	분과별 사업제안 및 사업실행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8:30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p>1. 사업 감사</p> <p>1) 주민자치회 조직 과정 및 절차</p> <p>2)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및 운영</p> <p>3) 물품 구입 및 관리의 적절성</p> <p style="padding-left: 20px;">※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p> <p style="padding-left: 20px;">-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회의, 민관협력회의, 실무회의 등</p> <p>2. 회계 감사</p> <p>1)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p> <p>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p> <p style="padding-left: 20px;">※ 지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p>
조치사항	<p>1. 주요 문서 관리대장 비치</p> <p>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p>
종합의견	<p>2021년 사업부문 감사결과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조례 기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었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직 운영되었으며, 회계부문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 편철 등 주민자치회 예산 및 집행 지침 기준에 따라 적정하였음.</p>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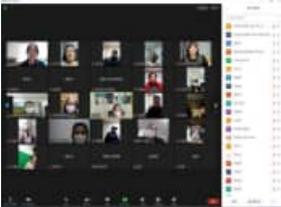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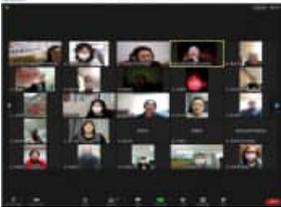
2021년 12월 31일  
제출인 대조동 감사 박순선

**은평구청장 귀중**

## 대조동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 정기회의

2022년 1월~11월 10차 정기회의 진행 (ZOOM영상/대면회의)





- ① 부회장 사임에 따른 임원선출 건 원안 가결
- ② 조례개정에 따른 대조동 운영세칙 개정 건 원안 가결
- ③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월 회비 납부 건 원안 가결
- ④ 대통령선거 선거법 관련 3월 정기회의 일시 변경 등 각종 집회 제한 등 원안 가결
- ⑤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비규정에 관하여 원안 가결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자치회관 재개관에 관하여 원안 가결
- ⑦ 주민총회 개최 일시에 관하여 원안 가결
- ⑧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부칙 개정에 관하여 원안 가결
- ⑨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부칙 개정(추가개정) 및 대추마을 한마음축제 후원금에 관하여 원안 가결
- ⑩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 자주율 최저금액 인상에관하여 원안 가결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 운영진회의



### 분과회의

#### 자치운영분과



#### 환경.안전.생태분과





### 홍보.소통.교육분과



### 건강.복지분과



### 민관 협력



## 사무국장 및 간사 채용 관련

사무국장 모집 공고	2022.4. 13.(수) ~ 4.22.(금) ◆ 10일간
2차 모집 공고	2022.4.27.(수) ~ 5. 1.(일) ◆ 5일간
사무국장 선발 합격자 공고	2022. 5. 2.(화)
간사 모집 공고	2022.4. 18.(월) ~ 4.27.(수) ◆ 10일간
간사 선임 합격자 공고	2022. 5. 2.(화)
사무국교육(사무국장, 간사)	2022. 5. 3.(화) ~ 6.22(수)

## 관내 대추나무식재 특화 마을 운동 의제실행

2022.3.28.(월)10:00~ 식재 행사 및 묘목 나눔



## 대조동 널리 알리기 안내도 설치 의제실

2022. 3.28.(월)10:00~ 식재 행사 및 묘목 나눔



## 의제발굴을 위한 마을 돌아보기

1차 2022. 5. 13.(금) 16:00~18:00





2차 2022.05.14.(토) 16:00~18:00



## 6월4일 역량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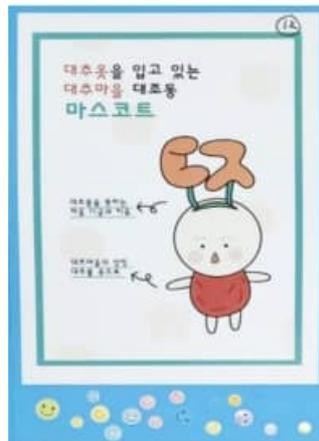


### 캐릭터 공모사업

금상(신재옥)



입선(임지민)



입선2(김현령)



### 특별한 방학놀이터

미술코딩 아티스트





골목놀이



여름방학 놀이터 물놀이장(2022.07.29.)



## 기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 EM교육



## 코로나19 극복! 주민교육

### 키오스크 교육



### MBTI 검사 및 교육



반짝반짝 레진키링



캘리그래피



오싹오싹 할로윈 책 읽어주기



돌러돌러 옛놀이



장수사진 촬영



생존팔찌 만들기



양말목 공예



어르신과 함께하는 <책읽기&Book가방 만들기>



기부프로젝트 나도,따뜻~ 너도,따뜻~ 뜨개방 운영



조물 조물 치매 예방 어르신 핸드폰 줄 만들기



기부프로젝터 방한용 마스크, 방한용 스카프 만들기



## 보조금 및 활동지원금 집행현황

<b>사업명</b>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사업							
<b>구성 현황</b>	주민자치회 구성 시기: '21. 01. 01			주민자치위원 수: 50명				
	분과 구성 현황: 분과수 (4개), 총인원 (54명)							
<b>사업 개요</b>	<p><b>사업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자치활동 실행</li> </ul> <p><b>사업기간</b>: 2022.1.1.~2022.12.31</p> <p><b>주요사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자치계획 실행,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지원</li> <li>- 2023 자치계획 수립 및 2022 주민총회</li> </ul>							
<b>총 예산</b>	총 153,005천원(시비: 37,605천원, 구비: 115,400천원)							
<b>예산 편성 내역</b>	<b>구분</b>	<b>주요내용</b>	<b>소요예산(단위: 천원)</b>					
			<b>계</b>	<b>지원금</b>		<b>단위: 천원</b>		
	시비	구비		지출액	잔액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범사업 동 사업비 총계		6,000		5,998,790	1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1,760		1,759	1	
			공공운영비	590		590	-	
			행사실비보상금	1,600		1,600	-	
		사업비	분과구성운영	2,050		2,050	-	
		간사활동지원비 총계		14,400	3,000	11,400	14,400	-
		사무국장 활동비 총계		14,000		14,000	14,000	-
	주민세 및 시민참여	주민세 및 시민참여예산 총계		68,605	28,605	40,000	51,260	17,345
		주민세	의제개발비	20,000		20,000	16,260	3,740
			기후 - 환경을 위한 작은실천 외2	28,605	28,605		17,500	11,105
		시민참여	특별한 방학놀이터	20,000		20,000	20,000	-
	동 지역사업	구 참여예산 총계		50,000		50,000	50,000	-
구 참여예산		책으로 여는 대통 외 2건	50,000		50,000	50,000	-	
합 계			153,005	37,605	115,400		17,346	

총 예산: 금 153,005,000원

지출액: 금 139,215,490원 ※ 2022.12.31. 기준

## 주민총회 추진 및 진행내용

내용	일정	세부내용
8월 첫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내용확정</li> <li>- 현수막 게시위치 및 개수</li> <li>- 제작업체 섭외, 주문</li> </ul>	<b>홍보물</b> (1) 현수막 (2) X배너 (3) 포스터 등
홍보준비		
8월 둘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사업 의제선정</li> <li>- 사전투표 운영준비</li> </ul>	<b>사전투표 거점 준비물</b> (1) 설명자료(요약본 등) (2) 주민총회 참여신청서 (3) 투표함 (4) 투표용지 (신청서 포함) (5) 홍보물 (현수막, 배너 등)
지역홍보활동 사전투표준비		
8월 셋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투표 현황점검 및 운영</li> <li>- 총회추진 중간점검 등</li> <li>- 분과별 거점에서 투표 및 홍보</li> </ul>	사전투표 접수대장 등
사전투표운영		
8월 넷째 주	<b>리허설 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대상, 참석인원 확정</li> <li>- 회의장 세팅방법</li> <li>- 개표방법, 개표장소 확정</li> <li>- 개표담당 지정</li> <li>- 업체일정 조율 등</li> </ul>	<b>리허설 계획</b> (1) 행사 시나리오 (2) 사회카드 (2) 업무분장표 (3) 행사시간표 (4) 행사장 배치도 (5) 개표장 배치도
사전투표운영 리허설 준비		



## 보조금 및 활동지원금 집행현황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0803 - 19호

### 2022년 제2회 대조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에 따라 『제2회 대조동 주민총회』를 개최 공고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2. 9. 2.(금) 14:00
- 장 소 : 대조동 주민센터 4층 생활체육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주민총회 대면 진행
- 보고 내용
  -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감사 결과 보고
  -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 주요 내용
  - 2023년 대조동 자치계획 승인 - 참여예산사업 동(洞) 지역사업 확정

#### 2. 주민총회 투표자격

- 투표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의 대조동 생활 주민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
  - 대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3. 사전투표

- 기 간 : 2022. 8. 16.(화) ~ 2022. 8. 19.(금)
- 방 법 : 거점투표, 현장투표 및 온라인 투표 / 참여의큰숲(epforest.kr/1)
- 거점투표 : 대조동 관내 거점 4곳  
(1)대조동주민센터 (2)대조어린이공원 (3)장미공원 (4)삼정스포렉스

#### 4. 개최요건

- 주민총회 개최일 한달전(2022.8.3.) 대조동 주민등록상 인구 26,884명 중에서 1%인 269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합니다.

#### 5. 결과보고

- 주민총회 개최 결과 : 은평구청 및 동 게시판에 게시 및 자료집 배포

#### 6. 기타사항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조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 7. 문의사항

- 대조동 주민자치회 ( ☎02-305-0276 ) / 대조동 주민센터( ☎ 02-351-5185 )

2022년 8월 3일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 주민총회 의제설명 및 사전투표 운영

2022.8.21.(월) ~ 8.25(금)

거점 : 대조동주민센터 / 장미공원 / 대조공원 / 삼성스포렉스



## 주민총회 실시 2022.09.02.(금) 14:00





## 8.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선정 보고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연번	사업의제
1	<p style="text-align: center;"><b>가로수를 예쁘게</b></p> <p>목적: 가로수 전문적인 관리 및 안전성과 미관 향상                      내용: - 대조동 전체 가로수 포플러나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지작업                      - 통신사에 의뢰 가로수에 얽혀 있는 통신선 정리 및 지하 매립 등 안전성 확보, 예쁘게 ~</p>
2	<p style="text-align: center;"><b>대조동 북카페를 “공공도서관”으로 만들기</b></p> <p>목적: 북카페 공간을 도서관으로 등록 운영                      내용: - 대조동 주민센터 내 북카페를 보다 전문적인 도서 공간으로 활용                      - 공공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의 필요성 대두</p>
3	<p style="text-align: center;"><b>지하철역 주변 종합안내도 설치</b></p> <p>목적: 지하철역 주변 노후 된 안내도 현행화 설치                      내용: - 스마트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새로운 안내도                      - 유동인구 많고, 어르신들 통행이 많은 불광역 7번, 구산역 1번 출구에 안내도 설치</p>
4	<p style="text-align: center;"><b>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b></p> <p>목적: 2022년 식재된 대추나무를 2023년에도 지속적 관리                      내용: - 2022년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추후 관리도 주민들이 직접 물도 주고 전지 및 수확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추나무 가꾸기를 통하여 주민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p>
5	<p style="text-align: center;"><b>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조공원</b></p> <p>목적: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자                      내용: -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대.소변 등 오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화단에 식물(꽃) 등 심기</p>
6	<p style="text-align: center;"><b>대조동 쓰벤져스(쓰레기 어벤져스)</b></p> <p>목적: 학교, 골목 등 지저분한 추락한 이미지 변화                      내용: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 CCTV 설치를 통한 경각심 고취                      - 상습 무단투기 배출 지역에 CCTV 설치</p>

# 대추마을 한마음축제





# 은평구 주민자치회 박람회 및 퍼레이드



# 자매결연 도&농 화합 및 활성화 추진 따뜻한 겨울 나기 김장김치 버무리심 및 나눔 활동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시	내용	진행
2021. 1.22. ~ 2. 2		내규 수립 의견수렴
2021. 2. 3		내규 수립 워크숍
2021. 2. 8	1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2021. 2.16	2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1. 3. 9	제정	1차 정기회
2021. 5. 4	개정	2022.3.정기회의 (위원 회비)
2022. 4.12	전면개정	2022.4.정기회의
2022. 9.13	부칙개정	2022.9.정기회의

2022.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1.03.09.  
전면개정 2022.04.12.

##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대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대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대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 3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 4 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 5 조(기념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6 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 7 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 8 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 조직이다.

##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 9 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 ④ 예비자가 없을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에 연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소명의 기회를 준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위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회장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 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1명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위 제 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간사 1명
- 2. 사무국장
- 3.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분과총무 각 1명

제 12 조(임원.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 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대조동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제 13 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 한다.

제 14 조(임원.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시 자치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 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 16 조(사임)** 운영진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업무인수인계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 18 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탁, 수탁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 19 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대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 사무국장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봉사직이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분과원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 총무를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 한다.

⑦ 분과 원은 분과 활동을 신청한 해당 동 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분과 활동을 한 주민을 의미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분과회의 참석 의결권은 있다.

**제 21 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진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 또는 분과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 결과 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3 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전 개최 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로 구성한다.
-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 ⑤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 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 24 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서 부의 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 26 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5세 이상의 주민(대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1%(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 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 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 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주민총회 상장 안전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 27 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제정, 개정, 폐지)
  2.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제 28 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자치회관 운영

**제 29 조(자치회관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활성화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 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 30 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31 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 제 34 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5 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간사는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 3 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 4 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근조기,축하기 & 현금 200,000원을 지급 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자녀)에 한함
3. 현금성 경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미한 지출 및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 결제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 본인 상해 3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0,000원 지급한다. 단. 2년 임기 중 1회에 한함.

⑦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⑧ 회비는 매월 보고하며 매년 12월 감사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⑨ 위원의 혜택은 연회비 및 매월 회비 완료 회원에 한함. 단.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시 위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통! 소통! 대조동!**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자료집**

---

발행일	2022.12.15.	
발행인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익남
편집인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전말숙
	대조동 주민자치회 간사	전영미

---